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1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규남, 김동욱,
김성준, 김영철, 김용일,
김춘곤, 박영한, 박철성,
서준오, 성흠제, 송도호,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
, 윤종복, 이민옥, 이상욱,
이소라, 이영실, 이원형,
임규호, 임만균, 한 신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된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음. 특히, 안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상 안전취약계층 관련 포함사항을 규정(안 제49조제2항).
- 나.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57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를 같은 조 중 제1항의 항번호를 삭제하고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안전취약계층 지원
2.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
3.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
4. 재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

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
2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
3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4.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
5.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7조(복구활동 등) ① 시장은 <u>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47조(복구활동 등)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	1. 안전취약계층 지원
	2.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
	3.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
	4. 재원 조달 방안
	5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~ ④ (생략)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<u>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	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1.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
2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
3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4.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
5.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②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